

2022-4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4시
장 소	협성대학교 본관 3층 제1회의실
재적의원 (13명)	(교 원) 노흥식(사직), 이종문, 김병호 (직 원) 김연상, 임현석 (조 교) 홍승훈 (학부모) 박학준 (학 생) 전윤정, 권태영 (동 문) 이길윤, 박경서 (대학발전) 최희용, 김동수
의안번호	안건내용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선출 - (前)노흥식위원장 사직
2	규정개정(안) - 협성대학교 학칙
3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 교원, 조교 정원 변경(안)



협 성 대 학 교
HYUPSUNG UNIVERSITY

기 획 처 기 획 예 산 팀

규정입안서

입안부서	기획예산팀
규정명칭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사유	<p>생명과학과 학과 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학과명 변경- 학과 교과과정과 일치하기 위함- 학과 자체 내 의견수렴 결과 : “생명과학과” -> “의생명화학과”
붙임	1. 신규대조표 1부.

1.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규대조표 1부

현 행				개정(안)				사 유
[별표1]대학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사. 2023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별표1]대학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개정 2022.00.00.) 아. 2024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 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명칭변경 - 현재 교육과정과 일치하기 위함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생략			신학대학	현행유지			
인문사회 과학대학	생략			인문사회 과학대학	현행유지			
경영대학	생략			경영대학	현행유지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소프트웨어공학과	40			소프트웨어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0		
	도시공학과	35			도시공학과	35		
	보건관리학과	40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40	이학사	
	생명과학과	40			의생명화학과	40		
예술대학	생략			예술대학	현행유지			
	웨슬리칭의융합대학	-			웨슬리칭의융합대학	-		
융복합전공	생략			융복합전공	현행유지			
합 계		1,004명	-	합 계		1,004명	-	
<삼 입>				부 칙				시행일 : 법인이사회 통과일
				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과학과 재적생은 의생명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 희망 시 이를 인정한다.				

규정입안서

입안부서	교무연구팀
규정명칭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휴업일에 ‘근로자의 날’ 추가 명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초과 지급(또는 1.5일 휴일)에 따른 휴업일 지정2.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설<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 학위와는 별개로 미니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최근 전공 수업 이외에 졸업 이후 취업등 진로를 위한 수요 증가
붙임	1. 신규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 행	개정(안)	사 유
<p>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p> <p>제9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 2. <u>국</u>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1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p><u>6. <신 설></u></p> <p>②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p> <p>제9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u>(개정 2022.00.00.)</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 2. <u>법</u>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1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p><u>6. 근로자의 날<신설></u></p> <p>②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p>	<p>-문구 수정</p> <p>- 근로자의 날 추가 명시</p>
<p>제9장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전공</p> <p><u>제37조의4 <신 설></u></p>	<p>제9장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전공</p> <p><u>제37조의4 【마이크로디그리】 ①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u></p> <p><u>②마이크로디그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u>[본조신설 2022.00.00.]</u></p>	<p>-마이크로디그리 신설</p>
<p><u><삽 입></u></p>	<p><u>부 칙</u></p> <p><u>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p>시행일 : 법인이사회 통과일</p>